

신용정보보호법 기반 신용정보보호

1. 개인정보의 정의

- 개인정보 :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저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개인 신용 정보 : 신용정보(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)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

개인정보 분류의 의미

금융기관 등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이고, 처리하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 경우 신용정보법 적용, 이 외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

*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요

2. 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의무 사항

[수집 이용]

개인신용정보 수집·이용 원칙

필요 최소한의 정보 수집, 동의(법15조), 민감정보 수집제한(법16조), 이용(법33조,법34조)

- 신용정보주체에게 필수적/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 획득
- 수집·이용 목적 / 수집 항목 / 보유 및 이용 기간 /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안내

[저장 관리]

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(법19조)

신용정보관리, 보호인 지정, 내부관리(법20조)

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(법31조)

- 개인신용정보 암호화
 - 비밀번호, 바이오정보 등 본인인증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, 조회할 수 없도록 조치
 -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·수신시 보안서버구축(웹서버에 SSL 인증서 설치 또는 암호화 응용프로그램 설치) 등을 통해 이를 암호화
 -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
- 주민등록번호 암호화
 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송·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
 -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 중간 지점(DMZ)에 주민등록번호 저장시 암호화
 -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암호화

[제공 위탁]

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, 조회(법32조)

개인신용정보 삭제(파기) 및 분리보관(법20조의 2)

-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관련 보안계약 체결
-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

【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관련 보안관리 대책】 (「신용정보업감독규정」 별표4)

-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·이용 목적
-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
-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
-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
- 신용정보의 사용·보관 기간 및 등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·반납에 관한 사항
-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
-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-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
-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상기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

[권리보장]

개인신용정보 유출통지, 신고(법39조의 2)

개인신용정보 이용, 제공사실 조회(법35조)

-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무소·점포 등에서 열람 가능토록 조치

【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 내역 조회항목】

1.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: 이용 주체, 이용 목적, 이용 날짜,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,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
 2.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: 제공 주체, 제공받은 자, 제공 목적, 제공한 날짜,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,
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
- ※ 개인신용정보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조회대상에서 제외되나 상품 및 서비스 소개 및 구매 권유 목적의 이용 제공은 조회 대상에 포함

동의철회, 연락중지(법37조), 열람, 정정(법38조)

-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
 - 제공 동의 철회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동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
 - 신용정보주체가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
-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
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·정정청구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절차 마련
 - 열람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,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이용을 중단하고 사실관계 조사
 - 조사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는 삭제 또는 정정하고,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게 삭제 및 정정한 내용을 고지

삭제요구(법38조의3)

-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마련
 -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상거래종료 후 일정기간*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 지체 없이 삭제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
 - *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: 5년
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 개인신용정보 : 3개월
 - 삭제를 요청한 개인신용정보가 삭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보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